추가약정서
(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 20 년 월 일

채무자 : (인)
주 소 :

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이 약정서는 1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[주1]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**4**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5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조 (처분대상 주택)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**보유**하고 있는 **1건의 주택**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구입대상 주택)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구입**하는 **주택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규제지역구분*	주소

*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지역을 기입

제 **4**조 (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)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**주택담보대출 실행일**(중도금 · 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**로부터**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1년,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(이하 **'정해진 기간'**) **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**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
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조 (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)
① **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**이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**대출실행일**(중도금 · 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**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**을 해야 합니다.
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즉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6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
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

5-06-0928(2-1) (2019.12 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-약관-183 호(2019.12.26)

KEB 하나은행

에 따라 **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

1.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**을 제 4조의 **정해진 기간까지 처분**(명의이전 완료)**하지 않는 경우**
2.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(중도금 · 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**1년 이내에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3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** 외에 다른 **주택**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**보유**하고 있는 경우

제 7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**본 대출 완제여부**에 관계없이 **신용정보 집중기관**에 **채무자**의 약정 **위반사실**이 **제공되며,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.**

1. 제 2조의 **처분대상 주택**을 제 4조의 **정해진 기간**(다만, 주택이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간까지) **이내에 처분**(명의이전 완료)**하지 않는 경우**
2.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대출실행일**(중도금 · 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**로부터 1년 이내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**
3. **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거나,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**

5-06-0928(2-2) (2019.12 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-약관-183 호(2019.12.26)

KEB 하나은행